

#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21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5월 30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상담·교육·문화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남권지역의 외국인지원시설로,
- 나.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이며,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아 시행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시설 개요

- 시설명 :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129
- 시설규모 : 가산종합사회복지관 내 시설 이용(65m<sup>2</sup>)
- 이용대상 : 외국인근로자 등 이주민

### 나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17. 1. 1. ~ 2019.12.31.)
- 위탁업무
  -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관리·운영
  - 노무, 법률, 생활 등 상담

- 한글·컴퓨터 교육 등, 의료지원
- 문화체험 행사
- 소요예산 : 220,929천원(2016년 기준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시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

#### 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4조의 3
- 민간위탁 추진현황
  - 1차 최초위탁 : 2007.5.1~ 2007.12.31(8개월 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회)
  - 2차 재계약 : 2008.1.1~ 2008.12.31(1년, 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회)
  - 3차 재계약 : 2009.1.1 ~ 2009.12.31(1년, 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회)
  - 4차 재계약 : 2010.1.1 ~ 2010.12.31(1년, 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회)
  - 5차 재계약 : 2011.1.1 ~ 2012.12.31(2년, 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회)
  - 6차 재계약 : 2013.1.1 ~ 2014.2.28.(1년 2월, 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회)
  - 7차 수의계약 : 2014.3.1 ~ 2016.12.31.(2년 10월 재단법인 도마니코수도회)
  - ※ 1,2차 공개모집 결과, 단독응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수의계약

#### 라. 민간위탁 및 재위탁 추진의 필요성

-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상담·교육·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.
- 외국인 증가에 따른 지속적 서비스 및 프로그램 다양성을 지향하고, 보다 체계적 네트워크 형성과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.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(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4조의3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-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」 제7조(지원의 범위), 제20조(업무의 위탁)

나. 예산조치 : 2017년 예산편성 요구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2016년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(외국인다문화담당관 - 5519, 2016. 5.16.)

※ 작성자 :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안전팀 정봉기 (☎ 5078)